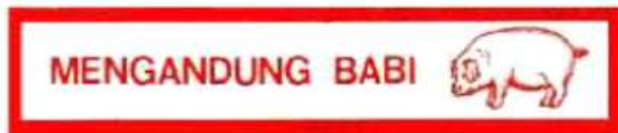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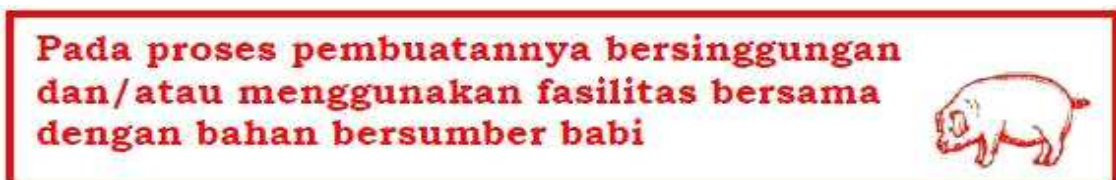
□ 비할랄 제품 표시 규정

1. 돼지 재료 및 파생원료의 함유 또는 시설 공유 생산 제품의 제품 표기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BPOM) 규정 2018년 31호, 2021년 20호 라벨링 규정에 하람성분 포함 제품의 표시 방법
- Mengandung Babi(돼지 성분 포함)
 - 돼지 원료가 함유된 식품은 “돼지 함유”라는 표시를 흰 바탕 위 빨간색 네모 칸 안에 빨간 글씨와 돼지 그림을 부착해야 함



- 돼지 원료가 함유된 의약품,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돼지 함유”라는 표시를 흰 바탕 위 검은색 네모 칸 안에 검은색 글씨로 반드시 부착
- 제조 과정 중에 돼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을 이용하였거나 접촉하였다는 경고 문구 부착
 - Pada proses pembuatannya bersinggungan dan/atau menggunakan fasilitas bersama dengan bahan sumber babi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표시기준(식약처고시 제2016-149호)」에 의거 한국 알레르기 유발 재료(돼지 등) 표기 의무
- 돼지고기 및 돼지 파생 재료를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경우 한국은 알레르기 유발 문제로 인해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고 있어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에서 알레르기 유발(돼지) 문구가 있는 제품에 위 문구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2. 알코올 함유 제품의 라벨링 표시 제도

- Perbpom No.31, 2018 규정에 의거 잔류 알코올을 공정상 보조제 및 첨가물, 직접 알코올 재료 사용 제품 그리고 자연발효 제품, 음료 제품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잔류 알코올 검사서를 제출하고 잔류 결과 함량을 라벨링 표기해야 함
- 라벨링 표시 방식 개정안 2021년 20호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품의 전면부에 표기되어야 하며, 그 잔류 함유량은 0.001%까지 검출시 할랄인증 제품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표기되어야 함. 할랄인증의 제품이라도 잔류 알코올의 표기 의무
- 자연발효로 인해 발생한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도 할랄인증 취득 가능

“Mengandung Alkohol ± … %”

* 출처 : 인니식품의약청 2018년 31호 및 2021년 20호 라벨링 규정

□ 인도네시아 BPJPH(할랄제품보장청) 해외할랄인증 제품 등록 절차 준비 사항 및 유의 사항 소개

- 상호인정체결(MRA)을 한 해외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서를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의 해외 할랄인증 등록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
- 해외 할랄 인증서의 등록 신청 (현재 시스템 준비 중)
- 절차 개요
 - 1) 기존 할랄인증 신청 사이트 접속 (<https://ptsp.halal.go.id/>)
 - 아이디가 없는 기업의 경우 계정을 신청한 후 로그인하여 사용 가능
 - 접수 신청은 수출업체의 인도네시아 수입업체 또는 대리인으로 위임장을 제공한 인도네시아 기업이 신청할 수 있음
 - 2) 해외 할랄 등록 메뉴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인니 할랄인증청(BPJPH)은 접수 후 5 근무일 내에 신청 구비서류의 무결성 검토하여 다음 절차로 처리 또는 부족 서류 등의 추가 또는 수정 요구사항 안내
 - 3) 서류 검토를 통해 이상 없을 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에서 등록비 인보이스 발행(신청 건별 IDR 800,000 예상)
 - 인보이스 발행일 기준 7 근무일 내에 비용 납부
 - 비용 납부 확인 및 납부 확인 처리
 - 4) 해외 할랄인증서의 등록 번호 부여 및 등록 확인서 발급

- 해외 할랄인증서의 등록 준비 서류 안내
 1. 해외 할랄인증 등록 신청서
 2. 위임장(LOA)은 해외 할랄인증 등록 신청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회사로서 신청자에게 권리 및/또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형식
 3. 수입업자 및/또는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인의 사업 허가 번호(NIB)
 4. 인도네시아 세관 지역으로 반입될 제품에 대한 해외 할랄인증서 사본, 권한 있는 공무원이 서명한 합법적 형태의 해외 인도네시아 대표(대사)가 승인(공증)한 해외 할랄 증명서 사본(한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 회원국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으로 가능)
 5.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상품 목록에는 HS code 번호가 명시되어 함
 6. 제출된 서류가 정확하고 유효하다는 진술서(Surat Pernyataan)
- 유의 사항
 1. 해외 할랄인증서의 유효기간 기준으로 등록증이 발급이 됨
 2. 해외 할랄인증서의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전에 필히 갱신 신청해야 함
- 인도네시아는 해외 할랄인증기관과의 교차인증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11월 18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한국의 할랄 인증기관 한국이슬람중앙회(KMF), 한국할랄인증원(KHA)과 상호인정(MRA) 체결
- 이에 따라 한국의 2개 기관에 할랄인증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해외인정 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 식품은 사전에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의 해외 할랄인증 등록을 받아야 사용 가능

- 인도네시아 할랄 로고 표기 사례 (상호인정된 해외 할랄 로고 사용 시)

| | |
|---|---|
| <p>인니 할랄인증 로고와 상호인정을 받은 해외 할랄인증 로고 병행 표기(KMF)</p> |  |
| <p>인니 할랄인증 로고와 상호인정을 받은 해외 할랄인증 로고 병행 표기(KHA)</p> |  |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국가 할랄로고(Sihalal) 필수 표기 의무

* 출처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홈페이지(BPJPH)

III | 통관문제사례 관련

(해당없음)

IV | FTA 이행이슈 관련

(해당없음)